

「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2. 6. 13일 장문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2012. 6. 20일 제186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,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일부개정(2011.10.15 시행)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(안 제2조 2호)
- 법률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와 국회 기준으로 순화

3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2011. 10. 15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조례 본문 내용 중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인용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임.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